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 5. 7. 제 천 시 장
- 회 부 일 : 2008. 5. 9.
- 상 정 일 : 2008. 5. 13.(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건위 제1차회의)
2008. 6. 25.(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건위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팀 지선대)

가. 제안이유

노동부산하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내부방침으로 2009년 소도시 8개 캠퍼스에 대한 운영 평가 후 기능전환 및 폐교를 할 계획에 있어 제천캠퍼스의 폐교를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대학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2조)
 1.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대학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2.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교육여건 개선사업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위원회 구성(안 제5조)

1.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원은 의회의원 2명, 공무원 3명, 학장 추천 3명, 시장추천 2명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석영)

[현 황]

- 기능대학은 국가기간산업과 신산업분야의 중간기술자(다기능기술자) 및 중간관리자(기능장)등 중추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능대학법」 과 「사립학교법」 에 의하여 설립된 2년제 대학임.
- 그동안 기능대학은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분야 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왔으나 학생모집자원의 감소, 이공계 및 제조업 관련직종의 기피현상 등 외부환경이 변화되고 운영상 문제점도 노출되어 왔음.
- 따라서 정부는 2005년도에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동일권역 내 중복 설치되어 있고,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관 또는 지리적으로 아주 근접한 기관을 통·폐합하여 권역별 1 대학 다수 캠퍼스로 전환한 후, 2007년도부터 지역별 법인체제로 개편 하였으며 현재 전국에 7대학 36개 캠퍼스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제천 기능대학은 한국폴리텍IV대학에 소속된 제천캠퍼스로 되어있음.
- 학교법인 기능대학에서는 전국의 기능대 캠퍼스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소도시 8개 캠퍼스에 대하여 운영 평가 후 기능전환 및 폐교 등을 추진하고 있음.

[법적검토]

- 기능대학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기능대학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과 훈련 시설·장비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법적인 하자는 달리 없다고 사료됨.

[행정적검토]

- 기능대학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은 기능대학 고유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기능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 산업인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볼 때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범위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례안 제3조에서 학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학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우선 순위와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고 사료 됨.
- 우리시에서는 2006년부터 제천기능대학(한국폴리텍 IV대학 제천 캠퍼스)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으로 매년 1억원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본 제정 조례 안은 제천기능대학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음.

【 불임 참고자료 】

1. 한국폴리텍대학 현황
2. 한국폴리텍IV대학 제천캠퍼스 현황
3.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유영화 위원)

- 조례제정이 시급하게 필요한지 납득할만한 근거?
- 입법예고시 안 제2조 지원사업의 범위가 조례안의 내용과 상이한 이유?

나. 답변요지 <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

- 8개 폴리텍대학 평가를 잘 받아야만 대학준치가 가능하고 철도대학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조례가 꼭 통과되어 함.
- 기능대학과 관련된 지원사업의 범위는 해당대학의 고유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할 것임.

5. 소 수 의 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한국폴리텍IV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 1부. 끝.